

인천광역시 영종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 16 호

2026년 9월 16일 수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-1601호 (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
-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-1604호 (빈집 정비 촉구 및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)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영종구

편집 : 홍보미디어실

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- 1601호

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16일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□ 제 안 이 유

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가 이관됨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및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

□ 주 요 내 용

- 가. 주민자치회 근거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5조, 제11조, 제14조)
- 나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정비(안 제7조)

□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
- 나.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
- 라. 기 타

□ 의 견 제 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(참조: 총무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주민자치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▷ 주 소 : (우23303)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, 4층
(중산동)

인천광역시 영종구 총무과(주민자치팀)

▷ 전 화 : 032)760-7182 [FAX 032)760-7159]

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7항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주민 자치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 자치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 까지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	제5조(기능) -----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(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), 인천광역시 지	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 1. · 2. (생략) 3.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.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학교: 「교육기본법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대학 등 각종학교 2. 기관: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 3. 직능단체: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. 공공단체: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(생략) 제11조(정치적 중립)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	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11조(정치적 중립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7항----- ----- -----. 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7항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제7항----- 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3. 선거운동을 하거나, <u>특별법</u> <u>제40조제5항</u>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. (생략)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<u>특별법 제40조제5항</u>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. ~ 4. (생략) ③ (생략)	
---	--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주민 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의견제출 내용			

제출일자 : 년 월 일
 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

빈집 정비 촉구 및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

「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」 제11조(빈집의 철거 등)의 규정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하였으나, “폐문부재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[송달]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처분제목 : 빈집 정비 촉구 및 직권 안전조치 통지
2. 공고기간 : 2026. 9. 16. ~ 2026. 9. 30. 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시·군·구보, 게시판, 홈페이지
4. 공시송달 대상

순번	관리등급	소재지	소유자	건축물 현황				건축물 사진
				층	구조	용도	면적(㎡)	
1	2등급	덕교동 713-1	구○기	0/1	목조	단독주택	122.31	
2	3등급	을왕동 179-139	장○기	0/1	흙벽돌	단독주택	28.56	

5. 유의사항

- 가. 기한 내에 안전조치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중구 건축과 건축팀(☎032-760-799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견 제출서 1부. 끝.

2026. 9. 16.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